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호	1711
-----------	------

2024년 4월 30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이병운 의원 외 38명

나. 제안일자 : 2024년 04월 03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04월 08일

라. 상정일자

○ 제323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4년 4월 30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병운 의원)

가. 제안이유

○ 조례의 취지와 다르게 대중교통요금 조정을 위한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음

- 이에 대중교통요금 조정 시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하여 시민의견 수렴을 내실화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가. 대중교통요금 조정을 위해 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청취안을 작성하여 서울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나. 조문 체계와 형식을 고려하여 조문을 수정함 (안 제1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4. 12. ~ 2024. 4. 16.
- 제출의견 :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sup>1)</sup>

###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대중교통 요금은 원가수준, 적자규모,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대중교통 기본조례」 제14조 등),
- 대중교통 요금 조정이 서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요금 조정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이행할 것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 (동 조례 제10조)
- 시민 의견수렴 내실화를 위해 시민 의견수렴 후 요금조정 의 건청취안을 작성하도록 그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취지로써 원안 동의함

---

1) 교통정책과-7103호(2024.4.18.) “제323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

##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요금 조정 시 공청회 등을 사전에 개최하고 시민의견을 반영한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조례에 명시하고 불합리한 조문 체계를 수정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 요금조정 위한 시민의견 수렴 절차 관련(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시장이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임
- 서울시는 최근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면서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이후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동 조례<sup>2)</sup>의 취지와 다

2)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10조(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르게 행정절차를 형식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 시장이 시행해야 하는 시민 의견수렴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조성 시 시민의 의견을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대중교통 요금 조정 추진일정**

- 시의회 의견청취(안) 제출 : '23.2.9.
- 공청회 개최 : '23.2.10.
- 시의회 상임위 의견청취(안) 심사 : '23.3.7.
- 요금 조정 : '23.8.12.(버스 요금), '23.10.7.(지하철 요금)

**■ 조례 체계 수정 관련(안 제17조)**

- 안 제17조는 법령 체계 중 본칙의 조문형식에 맞게 제1항을 조문의 본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를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 “조”를 “항”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17조는 “조”를 세분할 필요가 없음에도 항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문형식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운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11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4월 03일

발 의 자: 이병운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민병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민석, 이봉준,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종태, 이희원, 임춘대, 최민규, 최유희,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38명)

## 1. 제안이유

- 조례의 취지와 다르게 대중교통요금 조정을 위한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음
- 이에 대중교통요금 조정 시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하여 시민의견 수렴을 내실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대중교통요금 조정을 위해 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청취안을 작성하여 서울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나. 조문 체계와 형식을 고려하여 조문을 수정함 (안 제1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견청취 전에”를 “위해”로, “수립해야”를 “수립하고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한 <u>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u>수렴해야</u> 한다.</p>	<p>제10조(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            -- <u>위해</u> -----            -----            -----            ----- <u>수렴하고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u> --            -.</p>
<p>제17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① (생략)</p>	<p>제17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현행 제1항과 같음)</p>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견 청취 시 시민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 계 분 석 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l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